

(우)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연구팀장 김선우[6576] 팀원 윤영섭[6580]/ E-mail : kmarbrv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11892호

시행일자 2023. 12. 1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2호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2호 (2023.12.13.)

3. 상기 호 관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[별표2]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0호, 2023.12.1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고시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 :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

- 가산제도(종별가산율,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) 관련 급여기준 변경
-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
-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,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서식(제13호) 변경
-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→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
-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·신설
-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 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변경

□ 시행일 : 2024.01.01.(월)

붙임

- 1) (제2023-242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(3차개편).
- 2) (제2023-242호)+3차+상대가치+개편+관련+급여기준+개정+질의응답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
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